영장 없이 이루어진 자택 내 총기 수색 및 압수의 위헌성[1)]

1. 사건개요

아내와 다투던 상고인 Edward Caniglia는 그의 침실에서 권총을 가져와 거실 테이블 위에 놓고 자신을 쏘라고 말했다. 그의 아내는 이를 거절하고 집을 나가 그날 밤 호텔에 머무른 뒤, 다음날 아침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남편의 안전 확인을 요청하였다. 경찰들(피상고인)은 상고인의 아내와 함께 집을 찾아갔고, 현관에서 상고인과 마주쳤다. 상고인은 경찰들과의 대화를 나누었고 자신이 자살충동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고 대답하였으나, 경찰들은 상고인이 자기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구급차를 불렀고, 상고인은 경찰이 상고인의 총기를 압수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후에야 정신과 진단을 위해 병원에 가는 것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구급차가 상고인을 태우고 출발한 뒤, 경찰들은 상고인의 아내에 안내를 받아 - 아내는 경찰들로부터 남편의 의사를 잘못 전달받았다고 함 - 상고인의 집에 들어가 두 자루의 권총을 압수하였다.

상고인은 경찰들이 미국 헌법 수정 제4조[2)]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그의 집에 들어와 총기를 압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소하였다. 연방지방법원은 경찰 측의 손을 들어주었고, 제1연방항소법원도 경찰들의 총기 압수가 영장주의에 대한 “지역사회 관리상의 예외”(community caretaking exception)에 해당한다고 보고 연방지방법원의 판단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의 자택 내 총기 압수가 영장이 필요 없는 지역사회 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판결요지

1) Caniglia v. Strom, 593 U. S. ____ (2021)(No. 20-157)(2021. 5. 17. 결정).

2) **미국 헌법 수정 제4조 (수색 및 체포 영장)**
부당한(unreasonable) 수색, 체포, 압수로부터 신체, 가택, 서류 및 동산의 안전을 보장받는 개인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영장은 상당한 이유에 근거하고, 선서 또는 확약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수색될 장소, 체포될 사람 또는 압수될 물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는 발부될 수 없다.

대법관 Thomas의 법정의견(전원일치)

(1) 서설

미국 헌법 수정 제4조는 부당한 압수·수색·체포로부터의 자유와 영장발부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수십 년 전 연방대법원은 Cady v. Dombrowski, 413 U. S. 433 (1973) 판결에서, 이미 압수되어 있는 자동차를 총기를 찾아내기 위해 영장 없이 수색한 것이 미국 헌법 수정 제4조의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Cady 사건에서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로 체포된 피고인의 자동차를 영장 없이 수색하여, 그가 소지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총기를 찾으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살인의 증거들을 찾아낸 사건이었다. 연방대법원은 '공공 고속도로'를 순찰하는 경찰관들은 종종 고장난 차량에 대한 대응조치나 사고 조사와 같은 비형사적 '지역사회 관리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위와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오늘 이 사건의 문제는 Cady 판결의 '관리' 임무가 주거에 대한 영장 없는 수색과 압수를 정당화하는 독립된 이론을 만들어내는지 여부이며, 이에 대한 답은 '아니다'이다.

제1연방항소법원은 Cady 판결에서 추론을 끌어내어, '개인과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위협은 고속도로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자동차와 주거 모두에 적용되는 '지역사회 관리상의 예외'를 추론하였다. 이에 따라 제1연방항소법원은 경찰의 행위에 대한 동의가 있었는지, 이러한 행위가 '긴급상황'으로 정당화되는지, 이러한 종류의 정신건강 관련 개입을 허용하는 주법이 있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제1연방항소법원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상고인과 그 주변인들을 보호하려는 이 사건 경찰의 노력은 영장을 요하는 형사사건 조사와는 다른 것이고, 법원이 보기에 정상적인 경찰 절차에 따랐다는 점이었다. 우리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제1연방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를 허가하였다.

(2) 판단

미국 헌법 수정 제4조는 “부당한 수색, 체포, 압수로부터 신체, 가택, 서류 및 동산의 안전을 보장받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한다. 이 규정의 가장 핵심은 “자신의 집에 들어가 머물고 그곳에서 부당한 정부의 침입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3]이다.

물론 수정 제4조가 사유재산에 대한 모든 달갑잖은 침입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수정 제4조는 ‘부당한’(unreasonable) 침입만을 금지한다. 따라서 몇몇 경우에는 집과 그에 딸린 땅에 대한 침범이 가능하다. 유효한 영장에 따른 수색과 압수가 가장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4] 또한 연방대법원은 부상당한 거주자의 긴급구호나 임박한 부상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 긴급상황의 경우에는 법집행관[5]이 영장 없이 사유지에 들어갈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6] 물론, 법집행관은 ‘어떤 일반 시민이라도 책임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하였을’ 조치(예를 들어, 집에 다가가 현관문을 노크하는 행위 등)를 일반적으로 취할 수 있다.[7]

그러나 제1연방항소법원이 취한 ‘지역사회 관리’ 이론은 위와 같이 연방대법원이 인정하였던 행위들을 모두 뛰어넘는 것이다. 원심은 피상고인인 경찰들이 영장이나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었고, 그들이 형사범죄에 대응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부인하였다. 또한 긴급상황이 있었는지에 대해 고려하는 것도 거절하였다. 그리고 피상고인 경찰들의 행위가 ‘상고인의 아내가 경찰 대신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면 일반 시민의 권한 내에 있었을 행위’와 유사한 것이라고 판결하지도 않았다.

Cady 사건의 판결이나 논리 모두 이 사건 경찰의 행위를 정당화시키지 않

---

3) Florida v. Jardines, 569 U. S. 1, 6 (2013).
4) Collins v. Virginia, 584 U. S. ___, ___-___ (2018) (slip op., at 5-6) 참고.
5) law enforcement offficers. 경찰관, 보안관 등.
6) Kentucky v. King, 563 U. S. 452, 460, 470 (2011); Brigham City v. Stuart, 547 U. S. 398, 403-404 (2006).
7) Florida v. Jardines, 569 U. S., at 8.

는다. Cady 사건이 영장 없는 총기 수색에 관한 사건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Cady 사건의 경우 수색이 이루어진 장소는 압수된 차량이었지 집이 아니었다. Cady 판결은 차량과 집이 헌법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였다.[8] 실제로 Cady 판결은 이미 경찰의 통제 하에 있는 차량에 대한 수색과 소유주의 거주지에 인접하여 주차된 차량의 수색을 분명하게 대비시켰다.[9]

Cady 판결은 "차량은 빈번하게 공공 고속도로에서 고장나거나 사고가 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경찰은 운전자를 돕는 등, 종종 비형사적 '지역사회 관리 기능'을 수행하도록 요구된다."[10]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렇듯 현대사회에서 경찰관이 많은 시민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에 대한 인정은 단지 그러한 업무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 그러한 업무를 어느 곳에서나 제약 없이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3) 법정의견의 결론

차량에 있어서 타당한(reasonable) 것과 집에 있어서 타당한 것은 다른 것이다. Cady 판결도 마찬가지의 취지였고, 연방대법원도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의 범위를 '영장 없이 집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도록 확대하는 것에 반대해왔다.[11]

그러므로 원심을 파기환송한다.

대법원장 Roberts의 보충의견(2인 의견)[12]

15년 전, 연방대법원은 Brigham City v. Stuart 판결에서 "보안관의 역할

8) 413 U. S., at 439, 440-442.
9) Id., at 446-448 (Coolidge v. New Hampshire, 403 U. S. 443 (1971) 인용).
10) Id., at 441.
11) Collins, 584 U. S., at ___ (slip op., at 8).
12) Roberts 대법원장과 Breyer 대법관의 의견.

은 단순히 사상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폭력을 방지하고 질서를 되찾는 일을 포함한다."라고 전원일치로 인정한 바 있다.[13] 또한 심각한 부상을 입었거나 그러한 부상의 위협을 받는 사람을 돕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집에 들어가는 데 있어 영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하였다.[14]

오늘 법정의견의 어느 부분도 이에 배치되지 않으므로 법정의견에 동조한다.

대법관 Alito의 보충의견(1인 의견)

나는 법정의견에 함께하면서도 법정의견에 대한 나의 해석을 설명하고 법정의견이 결정하지 않은 몇 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강조하기 위해 별도의 보충의견을 작성하는 바이다.

(1) 법정의견은 '지역사회 관리'를 포함하는 폭넓은 카테고리를 위한 특별한 수정 제4조상의 원칙은 없다고 판결하였고 나도 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지역사회 관리'는 형사법 집행 이상의 수많은 경찰업무를 묘사한 것이고, 이러한 업무는 매우 광범위하며, 앞으로 얼마나 그 범위가 확대될지에 대한 분명한 한계도 없다. 그러한 카테고리에는 지역사회가 분담시키기로 결정한 '법집행 업무가 아닌' 일도 잠재적으로 포함된다. '지역사회 관리'라고 표현될 수 있는 활동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수정 제4조가 요구하는 타당성(reasonableness)이 이 폭넓은 카테고리에 들어오는 모든 것에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Cady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그러한 독립된 수정 제4조의 카테고리를 인정한 것이 아니다. Cady 판결은 단지 지나가는 말로 "지역사회 관리"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뿐이다.

---

13) Brigham City v. Stuart, 547 U. S. 398, 406 (2006).
14) Id., at 403; Michigan v. Fisher, 558 U. S. 45, 49 (2009).

(2) 모든 것을 포함하는 '지역사회 관리' 이론은 없지만, 법집행 목적이 아닌 모든 수색과 압수가 - 형사사건에서 발전된 - 수정 제4조의 원칙들에 따라 정확히 똑같게 분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원칙들은 다양한 비형사법집행 맥락에서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는 오늘 이 점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았다.

(3) 이 사건은 지역사회 관리와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유형, 즉 자살을 방지할 목적으로 한 수색과 압수에 해당한다. 상고인이 정신과 진료를 위해 경찰관과 동행한 것이 자발적 동의가 아니었다고 상정하면,[15] 상고인은 체포된 것이고 심각한 자유의 박탈을 겪은 것이다. 이러한 영장 없는 체포가 정당한 것인가? 연방대법원은 정신질환 치료 시설에 대한 비자발적 약속에 관하여 적법절차에 따른 기준에 대해 다룬 적이 있다.[16]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압수 - 즉 사람이 임박한 자살의 위험을 보여주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단기간의 압수 - 에 대한 수정 제4조상의 제한에 대해서는 다룬 적이 없다. 모든 주들이 정신질환의 치료, 관찰, 또는 안정을 위한 긴급 압수를 허용하는 주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법들은 긴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의 카테고리, 그러한 조치를 정당화 할 수 있는 근거, 사법절차의 필요, 절차의 성격 등 많은 면에서 다르다. 상고인은 단지 무심코 이러한 주법들을 언급하며, 이러한 주법들의 특징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지만, 법정의견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였다고 생각한다.

(4) 일부 주에서는 경찰이 자살이나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법원의 명령에 따라 총기를 압수할 수 있는 주법률을 제정하고 있다.[17]

---

15) 제1연방항소법원은 경찰이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상고인의 총기를 압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상고인의 동의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고 추정하였다.

16) Addington v. Texas, 441 U. S. 418, 427 (1979); see also O'Connor v. Donaldson, 422 U. S. 563, 574-576 (1975); Foucha v. Louisiana, 504 U. S. 71, 75-77, 83 (1992).

17) 예를 들어, Cal. Penal Code Ann. §§18125-18148 (West Cum. Supp. 2021); Fla. Stat. §790.401(4) (Cum. Supp. 2021); Mass. Gen. Laws Ann., ch. 140, §131T (2021).

이러한 주법률들은 보통 충족되어야 할 기준과 총기 압수 전에 따라야 할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주법률들은 수정 제4조의 위반 여부로 연방대법원에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오늘의 판결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었던 것은 아니다.

(5) 한 가지 카테고리가 추가적으로 언급될 필요가 있다. 바로 거주자에게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데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인지 확인하기 위해 영장이나 동의 없이 집을 수색하는 경우이다. 구두변론 당시 Roberts 대법원장은 이러한 점을 강조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는 한 가지 상황을 가정해 보았다. 평소 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노인이 이웃과 함께 오후 6시에 저녁을 먹기로 했는데 오후 8시가 되도록 오지 않아 걱정이 된 이웃이 경찰에 전화한 경우이다. 노인이 집을 나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으며 이웃이 그 노인의 친인척에게 전화해도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만일 경찰이 그 노인이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해 영장 없이 노인의 집에 들어갔다면, 이는 수정 제4조의 위반이 되는 것일까?

상고인의 대답은 위반이라는 것이었다. 실제로 상고인은 설사 24시간이 지났더라도 경찰은 영장 없이는 적법하게 집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만일 며칠이 지나도 상황이 그대로이면, 경찰은 실종사건으로 영장을 받은 후에 집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장의 질문은 중요한 현실 문제에 관한 것이다. 오늘날,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 수많은 노인들을 포함하여 - 혼자 살고 있다. 많은 노인들이 집에서 넘어지거나 기타 이유로 움직일 수 없게 되고, 불행하게도 그러한 노인들이 전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의 가능성은 점점 흐려진다. 만일 Roberts 대법원장이 가정한 상황에서 경찰이 수정 제4조에 관한 상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노인이 살아서 발견되지 못할 확률이 꽤 크다. 이 노인에게 집은 자신의 성(castle)이었을 수 있지만, 고통 속에 혼자 죽어가는 장소가 되기를 원하지

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 선례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다룬 적이 없다. 연방대법원이 '긴급상황'인 경우에는 경찰이 영장 없이 집에 들어갈 수 있다고 판결한 적은 있지만,[18] 긴급한 상황이라는 것은 영장을 발부받을 충분한 시간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19] 일반적으로 영장은 개인의 건강이상 여부를 체크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발부되지 않는다. 아마도 주에서 이러한 영장의 발급 절차를 도입하더라도, 그 동안 법원들은 기본적인 수정 제4조의 타당성에 관한 문제들을 해결하느라 노력해야 할 것이다.

(6)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카테고리의 상황들은 예시적인 것이다. 법집행 목적이 아닌 다른 압수와 수색도 나타날 수 있고, 수정 제4조에 관한 그 고유의 문제들을 제기할 수도 있다. 오늘의 판결은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 결정한 것이 아니다.

요컨대, 법정의견이 폭넓은 '지역사회 관리'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적절하였다고 본다. 그리고 법정의견은 그 이상 더 나아가지도 않았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는 법정의견에 전부 동의한다.

대법관 Kavanaugh의 보충의견(1인 의견)

나는 법정의견에 전부 동의한다. 나는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집 안에서 도움을 요하는 사람을 돕는 경찰의 타당한 조치를 막는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장의 주장을 강조하고 상술하기 위해 별도의 보충의견을 작성한다. 예를 들어, 경찰이 잠재적 자살을 방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고 넘어져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지도 모르는 노인을 돕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인 경우, 영장 없이

18) Payton v. New York, 445 U. S. 573, 590 (1980).
19) Missouri v. McNeely, 569 U. S. 141, 149 (2013); Michigan v. Tyler, 436 U. S. 499, 509 (1978).

집에 들어갈 수 있다.

1791년에 비준되고 1868년에 주에도 적용되게 된 수정 제4조는 “부당한 수색, 체포, 압수로부터 신체, 가택, 서류 및 동산의 안전을 보장받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한다. 헌법 조문이 밝히듯, 수정 제4조의 시금석은 타당성(reasonableness)이다.[20] 법 집행관이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상당한 이유에 근거한 영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무엇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커먼로(common-law) 유추와 상식적 평가에 근거하여, 영장이 요구되지 않는 다양한 경우들을 인정해왔다. 예를 들어, 긴급상황 이론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경찰관이 영장 없이 집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한다. 불을 끄고 그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경우, 임박한 증거의 인멸을 막기 위한 경우, 도망치는 중범죄자를 긴급 추적중이거나 용의자의 탈출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법집행관이나 일반 대중의 안전에 대한 위협을 다루는 경우, 다친 거주자에게 긴급구호를 제공하기 위한 경우, 심각한 부상의 위협을 받고 있는 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등이 그러한 경우들이다.[21]

수년 간, 많은 법원들이 - 이 사건 제1연방항소법원과 같이 - 자신들이 지역사회 관리 이론이라고 이름 붙인 원칙에 의존하여 수사가 아닌 목적 - 예를 들어, 자살을 막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노인의 안전 확인 - 을 위해 영장 없이 집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오늘 법정의견이 설명하였듯이, 독립된 지역사회 관리 이론과 같은 것은 주로 집이 아니라 차의 수색을 위해 고안된 것이었다.[22]

수정 제4조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판례법은 이미 긴급상황 이론을 인정하고 있다. 긴급상황 이론은 상황의 긴급성으로 인해 법집행의 필요성이 너무 긴

20) Riley v. California, 573 U. S. 373, 381 (2014).

21) Mitchell v. Wisconsin, 588 U. S. ___, ___ (2019) (plurality opinion) (slip op., at 6); City and County of San Francisco v. Sheehan, 575 U. S. 600, 612 (2015); Kentucky v. King, 563 U. S. 452, 460, 462 (2011); Michigan v. Fisher, 558 U. S. 45, 47 (2009) (per curiam); Brigham City v. Stuart, 547 U. S. 398, 403 (2006); Minnesota v. Olson, 495 U. S. 91, 100 (1990); Michigan v. Clifford, 464 U. S. 287, 293, and n. 4 (1984) (plurality opinion); Mincey v. Arizona, 437 U. S. 385, 392-394 (1978); Michigan v. Tyler, 436 U. S. 499, 509-510 (1978); United States v. Santana, 427 U. S. 38, 42-43 (1976); Warden, Md. Penitentiary v. Hayden, 387 U. S. 294, 298-299 (1967); Ker v. California, 374 U. S. 23, 40-41 (1963) (plurality opinion).

22) Cady v. Dombrowski, 413 U. S. 433, 447-448 (1973).

절하여 영장 없는 수색이 수정 제4조 하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경우, 경찰이 영장 없이 집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23] 심각하게 다치거나 그러한 부상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을 도울 필요성은 그러한 인정된 긴급성 중 하나이다. 수정 제4조는 경찰관에게 그러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믿을 객관적으로 타당한 근거가 있고, 집안에서의 경찰의 행동이 상황상 타당하다면, 집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24]

이 사건에서 경찰관들은 긴급상황 이론에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긴급상황 이론의 모든 윤곽을 살펴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추후의 혼돈을 피하기 위하여, 긴급상황 이론이 어떻게 긴급구호 상황에 적용되는지 간략히 설명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Livingston 전 대법원장이 설득력 있게 설명한 바 있듯이, 비록 이 이론의 영역이 법원과 학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지는 못하고 있지만, 지역 경찰관들은 실종자, 아픈 이웃, 밤중에 열어둔 채 놔둔 구역 등에 대한 전화에 응답하는데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25] 실종자를 수색하고, 분쟁을 중재하고, 아프거나 다친 사람들을 돕는 경찰관의 책무는 한 번도 심각한 논쟁의 대상이 아니었고, 긴급 상황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의 책무도 마찬가지이다.[26]

그러한 현실에 부합하여, 연방대법원의 긴급상황에 관한 선례들은 - 경찰이 지금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 현재 진행 중인 위기가 있다고 믿을만한 객관적으로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영장 없는 출입을 허용한다.[27] 경찰은 위험이 이미 발생하였거나 곧 발생한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이를 아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만일 누군가가 심각한 위해를 받을 위험이 있고 경찰들이 바로 개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그로써 충분하다.

---

23) Brigham City, 547 U. S., at 403.
24) Brigham City, 547 U. S., at 406; Michigan v. Fisher, 558 U. S., at 47-48.
25) Livingston, Police, Community Caretaking, and the Fourth Amendment, 1998 U. Chi. Leg. Forum 261, 263 (1998).
26) Id., at 302.
27) Sheehan, 575 U. S., at 612; Michigan v. Fisher, 558 U. S., at 48-49; Brigham City, 547 U. S., at 406-407.

몇 몇 예시들은 이런 점들을 잘 보여준다.

만일 한 노인이 의료 상담 전화나 911에 전화해서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고, 집에 총기를 가지고 있으며, 죽는 편이 낫다고 말하였다고 가정해보자. 상담원은 경찰에게 이를 알리고, 두 명의 경찰관이 노인의 집으로 가서 노크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다면, 경찰들은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 물론이다.

이 경우, 거주자가 심각하게 다치거나 그러한 부상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믿을만한 객관적으로 타당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긴급상황 이론이 적용된다. 어쨌든 자살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자신을 언제라도 죽일 수 있다. 수정 제4조는 경찰들에게 자살이 벌어지는 동안 밖에서 하릴없이 서있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다른 예를 생각해보자. 한 노인이 평소답지 않게 일요일 교회예배에 빠지고, 낮부터 밤까지 계속 전화연락이 안된다고 가정해보자. 걱정된 친척이 경찰에 전화를 걸어 노인의 안전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였고 두 명의 경찰관이 노인의 집에 가서 노크하였으나 대답이 없다면, 경찰들은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 물론이다.

다시 말하건대 경찰은 거주자가 심각하게 다쳤거나 그러한 부상을 입을 위험에 있다고 믿을만한 객관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노인은 넘어져 다쳤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노인들의 일반적인 사망 또는 중상의 원인이다. 수정 제4조는 경찰이 집에 들어가 사람의 안전을 체크하는 일을 막지 않는다.

물론 법원, 경찰서, 경찰관들은 모두 이러한 종류의 사건에서 경찰관의 행동이 상황상 타당한 것인지 주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의 두 가지 예시 모두 - 집에 혼자 있는 유아가 관련된 사건과 마찬가지로 - 긴급상황 이론에 따라 완벽히 합헌인 영장 없는 출입의 유형을 묘사하였다고 생각한다.

위와 같은 의견으로 나는 법정의견에 전부 동의한다.

3.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수정 제4조의 영장주의에 대한 소위 '지역사회 관리상의 예외'를 주거의 수색 및 압수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건이다. '지역사회 관리상의 예외'를 처음 인정하였던 Cady 판결은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이 이미 견인되어 있던 상황에서 총기를 찾기 위해 경찰이 그 차량의 트렁크를 수색하였던 사건이었다. 이후 연방법원들은 '지역사회 관리상의 예외'를 주거에까지 확대하여 적용할지 아니면 차량에만 한정할지에 관해 의견이 나뉘었다. 이 사건의 경우, 연방지방법원과 연방항소법원 모두 '지역사회 관리상의 예외'를 주거에도 적용하였지만, 이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주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와 같은 연방대법원의 전원일치 판결은 2020년 5월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비무장 상태의 흑인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사건 이후 경찰 활동의 범위가 축소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최근의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경찰 활동의 범위를 실제 법집행 목적을 위한 활동으로 축소해야 하는지 논의가 뜨거운 상황에서, 영장 없는 압수·수색의 허용범위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 판결은 영장주의에 대한 '지역사회 관리상의 예외'가 주거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일단락 지었다. 하지만 Alito 대법관이 보충의견에서 강조하였듯이, 이 사건이 다루지 않고 앞으로의 향방을 열어둔 채 남겨둔 쟁점들과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Kavanaugh 대법관이 긴급상황 이론에 대해 따로 상술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것이다. 집에 있으면서 연락이 두절된 독거노인의 경우와 같이 영장 없이도 경찰이 집에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염두에 두었던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16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

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주거의 자유와 관련하여 영장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위 조항은 일반적인 체포·구속·압수·수색에서의 영장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3항과 달리 영장주의의 예외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아, 주거의 자유와 관련한 영장주의의 예외를 해석상 인정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2018. 4. 26. 2015헌바370등 결정에서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의 관계, 주거 공간에 대한 긴급한 압수·수색의 필요성, 주거의 자유와 관련하여 영장주의를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16조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주거의 자유와 관련하여서도 제한적으로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